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79
----------	------

제출년월일 : 2007. . .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 이유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천시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 증대
-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시민 제안 사항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민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위한 제천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시정평가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 시정평가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정함(안 제8조)
 - 시정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9조)
-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시민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시장의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제도적으로 명시(안 제13조)
 - 제안자의 자격을 명시(안 제14조)
 - 시민제안 채택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 수여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시민참여에 따른 재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3. 근거 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22조[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일부개정 2006. 10. 17 대통령령 제19702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31조[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71호]
-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정 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1]

4. 의안 전문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첨 부 : 1.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문 1 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정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와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각자가 해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안”이란 제천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 2 장 권리와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시민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적극적인 시정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 보장) ①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로 시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시정평가단의 기능) ①시정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장·단기 비전사업 및 주요현안사업에 관한 평가 및 의견 제출
2. 제천시 시정 평가 및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
3. 시정 발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 및 건의
4. 시민생활불편 사항 등의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②평가단장은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정평가단 구성) ①시민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위한 제천시민 시정평가단(이하 “시정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시정평가단의 단원은 주민공모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지역성, 전문성, 기능성, 공익성을 감안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정평가단의 평가단장 및 분과별 위원장은 각 1인으로 하고 평가단원에서 호선한다.

제9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정평가단의 출석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시정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3. 시정의 평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때
4. 기타 단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할 때

제11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시정평가단을 대표하고, 시정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평가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임시 단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주민의견 조사 및 제안

제12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의 제안) ①시장은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제안자의 자격)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자
3. 관내에 사무실을 둔 각급단체
4. 관내 학교 학생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시민제안의 채택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도 등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채택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권리 승계) ① 시민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시장은 제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제안자 또는 제안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제안자 또는 제안단체는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시상)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금상 : 1제안당 3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3. 은상 : 1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4. 동상 : 1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제 5 장 재정 및 행정지원 등

제18조(재정 및 지원) ①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에 필요한 회의장 및 사무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7조 및 제8조의 시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회의,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17 대통령령 제19702호]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 1. 3 법률 제8171호]

제31조 (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제안규정

[제정 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1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명선거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입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제천시장(혁신홍보팀장)

(경유)

제목 제천시민의 시정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질의회답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시민의 시정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3. 아울러 각종 선거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하여 해당 구·시·군위원회에서 회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우리위원회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임 제천시민의 시정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질의회답 1부. 끝.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담당

지도계장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82 (2007.04.11.) 접수 혁신홍보팀-1370 (2007.04.11.)

우 390-899 충북 제천시 청전동 518-1

/ <http://www.nec.go.kr>

전화 (043-646-6632) / 전송 (043-646-6638) / kabk2005@hanmail.net / 공개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질의회답

【 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천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3. 이에 동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사전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결과 시민제안으로 채택된 안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 및 부상 수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2007. 4. 4. 제천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이나,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채택된 제안이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007. 4. 11.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제천시 공고 제 2007 - 430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20.

제 천 시 장

제천시민의 시정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사유

- 제천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천시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 증대
- 시와 시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및 시민제안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함

3. 주요내용

- 시민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를 위한 제천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시정평가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7조)
 - 시정평가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정함(안 제8조)
 - 시정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9조)

-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시민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시장의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제도적으로 명시(안 제13조)
 - 제안자의 자격을 명시(안 제14조)
 - 시민제안 채택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 수여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시민참여에 따른 재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1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혁신홍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17, FAX 641 - 5529 담당자 : 이제봉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